

# 경품이나 사은품 제공도 사업상의 증여로 보아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사업자마다 고객확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가 있게 마련이다. 보통 고객유치를 위해 사은품이나 경품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혹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사은품이나 경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 매입세액공제되지 않는 재화의 사업상 증여는 매출부가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에는 공급대가가 수반됨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공급대가가 수반되지 않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즉,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경우가 있다.

흔히 사은품이나 경품 등을 증정하는 "사업상의 증여"가 이에 해당되는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사업상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받은 재화를 증여하는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수증자(사은품이나 경품수령자)는 세금부담없이 사은품이나 경품을 사용소비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수증자로부터 재화의 대가는 받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수증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사용·소비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판매촉진상 재화의 대가를 받지 않고 증여하는 입장에서 고객에게 세금을 별도로 요구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래서 보통 사업자가 자기예산으로 납부하고, 대신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거래의 부대비용으로 하여 비용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더라도 사업자 입장에서 상대방에게 대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없으며,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 재화의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하고 있다.

그러나 사은품이나 경품을 제공하는 사업상 증여 등의 간주공급 등의 모든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애초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재화의 사업상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사업자가 구입한 재화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어 그 이후의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는 매출부가가치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증여되는 재화(사은품이나 경품 등)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하는 것은 아예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아 사은품 등에 대해 따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가령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 또는 상품을 구입하는 자에게 구입당시 그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등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여 사업상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의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품 등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 46015-356, 2000. 2. 9).

그리고 사업자가 자기사업의 광고선전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로서 사업상의 증여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광고선전물품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 사은품이나 경품 등은 구매고객의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사업자가 구매고객에게 사은품이나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사은품이나 경품은 수령자의 과세소득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해야 할까?

보통 개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은품의 경우 계속적 거래, 구매, 판매량 등의 마일리지 비율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사은품은 이미 판매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으로 볼 수 없다(소득 46011-21044, 2000. 7. 26). 그러나 사은품이라도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지급되는 사은품이라면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제도 46012-12338, 2001. 7. 24).

역시 추첨을 통해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 등은 당첨자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지급자가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소득 46011-21019, 2000. 7. 22).

즉, 구매수량이나 구매금액에 따라 지급하는 사은품이라면 구매고객의 소득으로 볼 수 없으며, 반면에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사은품이나 추첨을 통한 경품 등은 구매고객의 기타소득으로서 사업자가 지급시에 원천징수를 해야 할 것이다.